

의안번호	2216978
의 퇴 인	강명구의원
회 답 일	2026.6.4.
추 계 번호	26D07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을 75세 이상 모든 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자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3억 9,400만원, 2031년 648억 6,100만원 등 향후 5년간 2,818억 4,500만원(연평균 563억 6,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 제16조의3제1항)	48,156	51,896	55,833	60,050	64,556	280,491	56,098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 (안 제42조제7항)	238	254	270	287	305	1,354	271
합계	48,394	52,150	56,103	60,337	64,861	281,845	56,369

주: 1.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16조의3제1항)와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안 제42조제7항)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다만 두 재정수반요인의 대상 확대 범위에 손자녀도 포함되어 있으나, 손자녀는 현행법에 따른 유족 등록 대상자가 아닌 관계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따라서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전몰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3제1항 (전몰군경자녀수당)	전몰군경자녀수당을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뿐만 아니라 모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지급함	의무규정
2	안 제42조제7항 (진료)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뿐만 아니라 모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손자녀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3제1항 (전몰군경자녀수당)	○	—
2	안 제42조제7항 (진료)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전몰군경자녀수당’이라 함)을 지급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여부, 최초 보상금 수급대상 및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라 자녀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표 2] 현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 및 지급액(2026년 기준)

	지급 구분	월 지급액
제적 자녀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779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승계 자녀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513천원
신규 자녀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657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의 지급구분 중 제1호 및 제2호는 제적자녀, 제3호는 승계자녀, 제4호는 신규자녀로 칭함
- 개정안은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및 위탁진료 비용감면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되어 있으나, 손자녀는 현행법에 따른 유족등록 대상자가 아닌 관계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16조의3제1항)

- (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른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 수는 2027년 5,816명, 2030년 6,412명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라 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가 되는 인원은 2024년 말 기준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전몰·순직군경 자녀 5,369명에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 수를 합하여 연도별 대상자 수를 추정
 - 본 추계에서는 전몰·순직군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가 100% 존재하여 신규로 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몰·순직군경배우자 등록 인원 중 사망자 수는 평균 149명

[표 3]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수(6·25전몰군경 배우자 제외) 및 사망자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등록인원 (6.25전몰군경배우자 제외)	7,252	7,090	6,961	6,765	6,622	—
사망자 수	116	162	129	196	143	149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2024년 말 기준 5,369명에 매년 149명을 추가하여 연도별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 수를 추정하면, 2027년 5,816명, 2031년 6,412명

[표 4]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몰·순직군경 수권자녀 (6·26자녀수당 수급자 제외)	5,816	5,965	6,114	6,263	6,4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급단가) 신규자녀 기준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단가는 2027년 690,000원/월, 2031년 839,000원/월으로 추정

-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단가는 신규자녀(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
- 2026년 예산 기준 신규자녀 지급단가는 매월 657,00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5%의 인상률¹⁾을 적용하여 추정

[표 5] 신규자녀 기준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월)

	2027	2028	2029	2030	2031
전몰군경자녀수당(신규자녀)	690	725	761	799	8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1억 5,600만원, 2028년 518억 9,600만원 등 향후 5년간 2,804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자 수(a, 명)	5,816	5,965	6,114	6,263	6,412	—
지급단가(b, 천원/월)	690	725	761	799	839	—
추가재정소요 (=a×b×12, 백만원)	48,156	51,896	55,833	60,050	64,556	280,4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률은 제적자녀와 승계자녀는 5.1%, 신규자녀는 15.9%임. 이와 같이 인상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적자녀나 승계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대비 신규자녀의 자녀수당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신규자녀에 대해서만 추가인상률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향후 추가 인상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계에서는 추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음

나.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안 제42조제7항)

□ (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 수는 2027년 971명, 2031년 1,071명으로 추정

- 전몰·순직군경 수권자녀 추정인원(표 4)에 2026년 기준 7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수권자녀 비율 16.7%를 적용하여 추정

[표 7]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몰·순직군경 수권자녀 (6·26자녀수당 수급자 제외)	5,816	5,965	6,114	6,263	6,412
7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수권자녀 (6·26자녀수당 수급자 제외)	971	996	1,021	1,046	1,0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위탁병원 진료단가는 2027년 28,186원, 2031년 37,721원으로 추정되고, 수진횟수는 추계기간 동안 8.7회 적용

-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탁병원 진료실적을 활용하여 진료단가 및 수진횟수 추정

[표 8] 위탁병원 진료실적(60%(유족) 감면진료):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연평균 증가율)
❶ 지원액(백만원)	9,822	8,498	10,730	11,656	12,683	-
❷ 진료연인원(명)	452,198	419,460	440,479	512,214	503,248	-
❸ 의료지원대상자(명)	44,674	50,190	52,836	58,544	63,054	-
❶/❷ 진료단가(원)	21,721	20,259	24,360	22,756	25,202	(3.8)
❷/❸ 수진횟수(회)	10.1	8.4	8.3	8.7	8.0	8.7

자료: 국가보훈부

- 진료단가는 2024년 기준 25,202원이고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며, 수진횟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8.7회
- 2024년 기준 진료단가에 추계기간 동안 3.8%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진료단가를 추정하면, 2027년 28,186원, 2031년 37,721원

[표 9] 위탁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회, 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진료단가	28,186	29,257	30,369	31,523	32,7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위탁병원 진료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800만원, 2031년 3억 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자 수(a, 명)	971	996	1,021	1,046	1,071	—
진료단가(b, 원)	28,186	29,257	30,369	31,523	32,721	—
수진횟수(c, 회)	8.7	8.7	8.7	8.7	8.7	—
추가재정소요 (=a×b×c, 백만원)	238	254	270	287	305	1,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로 확대하고 위탁병원 진료대상을 75세 이상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83억 9,400만원, 2031년 648억 6,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818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년~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	48,156	51,896	55,833	60,050	64,556	280,491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	238	254	270	287	305	1,354
합계	48,394	52,150	56,103	60,337	64,861	281,8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 및 위탁진료 지원 중 추계가 가능한 전몰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